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2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9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한 반설치조례중 의무규정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정하고 명예반장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반장 위촉기준 개정 (안 제5조)
- 20세 이상 60세 이하 → 20세 이상
- 지역예비군중 위촉한다라는 내용 삭제

○ 명예반장 운영규정 개정 (안 제6조)
- 명예반장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
- 명예반장의 위촉대상자 규정 개정
  ·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 삭제
- 명예반장의 해촉 규정 신설

○ 반상회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8조)
- 반상회 개최전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자율 개최토록 개정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하부조직)중 "말단 침투와"를 "전달과"로 한다.

제5조(반장)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반장은 관할구역 안에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 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,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명예반장) 제1항중 "둔다"를 "둘 수 있다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"을 삭제하고, 동항 "정부시책"을 "반의 일"로 하며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를 옮길 경우와 읍·면장의 해촉시까지로 한다.

제7조(임기)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정리

제8조(반상회) 제4항중 "반상회 개최 1~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"를 "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하부조직)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·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에 리를 두고, 리에 반을 둔다.	제2조(하부조직) ---------- 전달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
제5조(반장) ①~② 현행과 같음 1. 반장은 관할구역 안에 6월이상 거주한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위촉한다. ③ 현행과 같음	제5조(반장) ①~② 현행과 같음 1. 반장은 관할구역 안에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,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한다. ③ 현행과 같음
제6조(명예반장)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.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. ③현행과 같음 (신 설)	제6조(명예반장) ① ---------- ---------- 둘 수 있다. ② -------- 삭 제 ----- ---------- ---------- 반의 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 ③현행과 같음 ④ 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와 읍·면장이 해촉시까지로 한다.
제7조(임무) 반장은 읍·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	제7조(임무) ---------- -- ---------- ----------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~2. 현행과 같음 3.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과 반적부 관리 4~9. 현행과 같음	1~2. 현행과 같음 3.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정리 4~9. 현행과 같음
제8조(반상회) ①~③ 현행과 같음 ④ 읍·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~2일 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	**제8조(반상회)** ①~③ 현행과 같음 ④ 읍·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